

# 대법원 전합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한 5·18 유가족 권리 유효”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고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는 1990년대 보상을 지급한 때로부터 기준을 잡아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가 다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효를 잡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위자료 청구가 늦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앞서 2021년 11월 유가족인 유모씨 등 39명은 국가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가족 몫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개정 전 5·18보상법 16조 2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정 전 법률은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배상 청구를 막았으나, 현재 결정으로 현재는 '정신적 피해'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결정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 등을 선고한 다. /뉴스시스

## 2021년 현재 위헌 결정 후 유가족 위자료 청구 대법, “청구권 소멸” 항소심 판결 깨고 환송해

정 받아 동의한 뒤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국가는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한 만큼 민법 766조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1심은 원고 28명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 배상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유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유가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 즉 위자료가 5·18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애초 현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족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은 시점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이처럼 2심에서 일부 패소한 유가족 다수가 상고를 포기해 남아 있는 15명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은 소송을 낸 유가족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현재의 결정 전까지는 유가족들이 권리를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는 1심과 2심을 같이 한다.

권영준 대법관은 이런 다수의견을 대표해 “권리 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가 있다면 민법 766조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166조 1항)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990년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유가족들은 그 순간부터 국가를 상대로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대법은 가해자인 국가가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는지,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시도 내놨다.

권 대법관은 “관련자의 가족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1990년대)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이러한 파기환송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주심인 노태악 대법관은 홀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의 발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들에 대한 구제는 별도의 법 개정 또는 제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뉴스시스

## 광주·전남 사립대, 장기 동결 손들었다

### 광주대 3.1% 인상...타 대학들도 검토중 14~16년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 국가장학금 규모 축소도 인상카드 명분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해왔던 광주·전남 사립대학들이 물가 상승과 국가장학금 축소로 올리는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중이다.

21일 지역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광주교대 등 국립대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지만 사립대는 재정 압박이 커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대는 지난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등록금 3.1%를 인상했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차례 등록금을 인상했던 조산대는 26일, 광주여대는 27일, 동산대는 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15년 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호남대는 학생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10일 심의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전남 사립대는 길게는 16년, 짧게는 1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오다 1~2년 전부터 인상하고 있다.

사립대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3.19% 내에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지난해는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최대

인상률은 3.19%로 지난해 5.49%보다 낮아졌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장기간 동결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도 인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 축소도 등록금 인상의 한 명분이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등록금 동결 유인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해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15년 가까이 등록금을 동결하다보니 교육 경쟁력이 수도권에 비해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며 “인상한 등록금은 모두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한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 광주교육청, 2026 일반고 신입생 1만1711명 학교 배정

### 누리집서 배정 고교 확인... 지방순서 상관없이 전산 추첨 배정

광주시교육청이 22일 교육청 누리집과 나이스(NEIS) 고입 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1만1711명의 배정 고등학교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출신 중학교명, 생년월일, 성명을 입력하면 배정된 고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배정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전형요강에 명시된 배정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

자율형공립고와 과학중점학교는 지방순서에 따라 전산 추첨 배정하고, 그 외 일반고는 지방 순서와 상관없이 전산 추첨으로 배정했다. 이번 평준화 일반고 배정은 임의(강제)배정 없이 학생이 지원한 학교 중에서만 추첨 배정됐다.

광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배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포의 지리적 불균형과

특정지역 인구 과밀 등으로 광산구에서 북구와 서구로, 북구와 서구에서 동구와 남구로 밀려 배정되는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밀집 배정 현상은 최근 3년 간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시교육청은 학교 유형의 변경, 자치구별 정원 탄력 적용,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집중 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향후 2027년 3월 가칭 광산고가 개교하면 광산구 밀집 배정 현상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평준화 일반고 배정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고입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고 마을주민 6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전남 광양의 산불이 19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22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양 산불 진화율 100%를 선언했다. 산림당국은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2분께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 광양 산불 19시간30분 만에 완전

### “산림 48ha 불탔다”... 주민 600명 대피, 인명 피해 없어

타고 야산으로 번졌다.

이 불로 인해 주민 601명이 인근의 면

사무소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산불 영향으로 불에 탄 산림은 48ha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헬기 48대와 장비 421대 인력 4300명을 투입해 불을 꺾다.

한편 당국은 화재진압을 위해 전날 오후 3시48분께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거센 바람 등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후 4시31분 소방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광주와 전북, 경남지역의 산불 진화차를 투입하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뉴스시스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